

#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(주승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67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6. 15.

발의자 : 주승용 · 변재일 · 김경진  
민홍철 · 이용호 · 박준영  
노웅래 · 최도자 · 이용주  
박주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.

이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,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‘요준국유림(要存國有林)’과 ‘불요준국유림(不要存國有林)’을 ‘보전국유림’과 ‘준보전국유림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6조).

##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요존국유림(要存國有林)과 불요존국유림(不要存國有林)으로”를 “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불요존국유림 : 요존국유림”을 “준보전국유림 : 보전국유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불요존국유림이”를 “준보전국유림이”로, “요존국유림으로”를 “보전국유림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요존국유림은”을 “보전국유림은”으로, “불요존국유림은”을 “준보전국유림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요존국유림이”를 “보전국유림이”로, “불요존국유림으로”를 “준보전국유림으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요존국유림으로의”를 “보전국유림으로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요존국유림으로”를 “보전국유림으로”로, “요존국유림이”를 “보전국유림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“요존국유림에”를 “보전국유림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요존국유림을”을 “보전국유림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불요존국유림이”를 “준보전국유림이”로, “요존국유림으로”를 “보전국유림으로”로 한다.

## 1. 보전국유림

제17조의 제목 중 “요존국유림의”를 “보전국유림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요존국유림은”을 “보전국유림은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중 “불요존국유림의”를 “준보전국유림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불요존국유림이”를 “준보전국유림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의2 중 “불요존국유림으로”를 “준보전국유림으로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요존국유림의”를 “보전국유림의”로, “불요존국유림을”을 “준보전국유림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요존국유림에”를 “보전국유림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중 “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”을 “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준보전국유림”으로 한다.

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가목2) 중 “요존국유림(要存國有林)”을 “보존국유림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3제1항 제3호 중 “요존국유림(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를 “보전국유림(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요존국유림(要存國有林)”을 “보전국유림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국유림의 구분) ①산림청 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<u>요존국유림</u> (要存國有林)과 <u>불요존국유림</u> (不要存國有林)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요존국유림</u> 가. ~ 다. (생 략)</li> <li>2. <u>불요존국유림</u> : <u>요존국유림</u> 외의 국유림</li> </ol> <p>②<u>불요존국유림</u>이 다음 각 호 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는 이를 <u>요존국유림</u>으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• 2. (생 략)</li> </ol> <p>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<u>요존국유림</u>은 「국유 재산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,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<u>불요존국유림</u> 은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3항 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.</p> <p>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<u>요존국유림</u>이 다음 각 호의 어</p>	<p>제16조(국유림의 구분) ① ----- ----- ----- <u>보전국유림</u> 과 <u>준보전국유림</u>으로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보전국유림</u>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준보전국유림</u> : <u>보전국유림</u>- -----</li> </ol> <p>② <u>준보전국유림</u>이----- ----- ----- <u>보전국유림</u>으로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• 2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③ ----- ----- <u>보전국유림</u>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준보전국유림</u> 은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보전국유림</u>이----- -----</p>




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<u>불요존국</u> <u>유림으로</u> 재구분된 경우	2의2. ----- ----- <u>준보전국</u> <u>유림으로</u> -----
2의3. ~ 3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2의3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국유림의 대부등) ①산림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<u>요존국유림의</u> 사 용을 허가하거나 <u>불요존국유림</u> 을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<u>요존</u> <u>국유림에</u> 대한 사용허가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 다.	제21조(국유림의 대부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보전국유림의</u> ----- ----- <u>준보전국유림</u> 을-----. <u>보전국유림에</u> ----- ----- ----.
1. ~ 10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